

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(제23조 관련)

1. 공통

- 가. 균열폭측정기(7배율 이상이고, 라이트부착형일 것)
- 나. 반발경도측정기(교정장치를 포함할 것)
- 다. 초음파측정기(초음파 전달시간을 $0.1\mu s$ 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)
- 라. 철근탐사장비
- 마. 철근부식도측정장비(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)
- 바. 염분측정장비
- 사. 코어채취기
- 아. 도막(도료 도포막)두께측정장비(측정범위가 $0.1mm$ 이하일 것)
- 자. 측량기[수준(水準: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) · 각도 · 거리 측정용]
- 차. 강재비파괴시험장비
 - 1) 자분(磁粉)탐상기(Magnetic Testing, MT)
 - 2) 초음파시험기(Ultrasonic Testing, UT)

2. 교량 및 터널분야

- 가. 정적 변형측정장치
- 나. 동적 변형측정장치
- 다. 내공변위측정기(정밀도가 $0.01mm$ 이상일 것)

3. 수리시설분야

- 가. 유독가스탐지기
- 나. 관로누수탐지기
- 다. 금속관탐지기

4. 항만분야

- 유속계($0.1m/sec \sim 3m/sec$)

5. 건축분야

- 가. 진동측정기
- 나. 정적 변형측정장치

6. 종합분야

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비고

1. 진단측정 장비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정·교정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정·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.
2.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.